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64
----------	-------

발의연월일 : 2026. 4. 30.

발 의 자 : 김태선 · 김병주 · 이훈기  
박 정 · 허 영 · 서미화  
김영환 · 윤후덕 · 강준현  
백승아 · 한민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방식을 대행에서 위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 기상관측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형식승인대

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12조의4 및 제14조 등).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제12조의2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등)”을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식승인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형식승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형식승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형식승인대행기관”을 각각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5의 제목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을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을 “(검정기관의 지정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검정대행기관”을 각각 “검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중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를 각각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의 제목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을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 또는 검정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호 중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조”를 “제15조제1항”으로,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1호 중 “형식승인대행기관”을 “형식승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검정대행기관”을 “검정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형식승인대행기관”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식승인대행기관에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방법·절차 및 출입·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5(형식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

③ -----  
-----형식승인기관-----  
-----

-----.

④ -----형식승인기관-----  
-----형식승인기관-----  
-----

-----.

⑤ -----형식승인기관-----  
-----  
-----  
-----

-----.

제12조의5(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형식승인기관-----  
-----  
-----  
-----  
-----

-----.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를 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적절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을 출입·조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

-----  
-----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제1항에 따  
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검정기관-----  
-----  
-----검정기관-----  
-----  
-----.

⑤ -----  
-----검정기관-----  
-----  
-----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2. 3. (생략)

4. 제22조의2에 따른 검정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여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업무를 대행한 경우

제15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

⑥ -----검정기관-----

1. -----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2. 3. (현행과 같음)

4. -----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5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검정기관-----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검정증인)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기상측기와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정이 면제된 기상측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증인(檢定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2. (생략)

제25조(증표의 제시) 다음 각 호의 출입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생략)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출입·조사

3.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출입·조사

3의2. ~ 5. (생략)

제26조(청문) 기상청장은 다음 각

제16조(검정증인) -----  
검정기관-----

제22조의2(수수료) -----  
-----형식승인기관 또는 검정기관-----

1. 2. (현행과 같음)

제25조(증표의 제시) -----  
-----  
-----

1. (현행과 같음)

2. -----형식승인기관-----

3. -----검정기관-----

3의2. ~ 5. (현행과 같음)

제26조(청문)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형식  
승인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  
는 업무정지
3. 제15조에 따른 검정대행기관  
의 지정 취소 또는 검정업무  
의 정지

<신설>

-----  
-----  
-----.

1. (현행과 같음)
2. -----형식  
승인기관-----  
-----
3. 제15조제1항-----검정  
기관-----  
-----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이 법  
에 따른 기상청장의 업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  
탁받는 기관, 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자에게 업무 수행  
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  
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  
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제27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형식승인대행기관의 임원 및 형식승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검정대행기관의 임원 및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

1. 형식승인기관-----  
-----
2. 검정기관-----  
-----